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6
------	------

제출일자 : 2020. 11. 13.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0. 16. ~ 2020. 11. 5.): 의견없음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3)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5)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반영(여성가족과)

1. 제안이유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스마트도시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마.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5조)
- 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이하 “사회구성원”이라 한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제2항의 사회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제1항의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4.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법 제2조제3호다목의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4호의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 등)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12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2.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명 이내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구민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업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원·보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구민과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홍보디지털과 스마트도시팀 윤지영
연 락 처	2627 - 1547

관계 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마트도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

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

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⑥ 삭제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삭제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